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20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2. 20.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6,556,830원, 지방교육세 15,231,810원, 농특세 19,039,770원, 취득세 가산세 115,472,4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6,598,420원, 농특세 가산세 8,248,020원, 2017년분 재산세 4,759,210원, 지방교육세 951,84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2016년분 재산세 4,845,060원, 지방교육세 969,010원, 2015년분 재산세 3,942,350원, 지방교육세 788,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7. 10. [redacted]시 [redacted]구 B 창고건물 14710.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위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종속회사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 감면된 세액 상당액으로서 취득세(가산세 포함) 382,029,24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7,287,79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1,830,230원,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분) 3,942,350원, 지방교육세 788,470원,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 4,845,060원, 지방교육세 969,010원,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 4,759,210원, 지방교육세 951,8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감면신청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당시 심사의무가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다음 4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조세감면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감면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조세감면결정의 취소와 원고가 냈어야 했던 조세를 추징하는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교형량 없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해당성

중소기업기본법(2015. 2. 3. 법률 제13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동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별표 1,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일방 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이 타방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관계를 지배·종속 기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어 관계회사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의 매출액 평균은 381,561,133,39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관계회사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업종은 해운업, 화물중개 및 대리, 창고, 기타 운송서비스업으로서 원고의 업종(물류서비스업, 수출입 및 대행, 창고업)과 매우 유사한 점, 소외 회사와 원고의 임원이 중복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영업목적 수행을 위한 관계사로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소외 회사와 분리된 독자적 사업개시, 즉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조세를 감면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추후 잘못된 감면임이 밝혀진 경우라도 감면혜택을 유지해 줄 것이라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밖에 법률관계 주장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논의는 처분청이 처분상대방에 대하여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다음,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분청의 재량권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이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는 부과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로서, 납세의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과권자는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과 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정확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쌍방 모두에게 조세법 원칙 외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잘못된 감면처리를 취소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할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고,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납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혹한가 여부를 판정하는 일반적인 행정법 관계에서의 재량요소는 고려할 여지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는 금전채권 · 채무관계일 뿐 시혜적인 사회보장 영역과는 법리를 달리하는바, 피고가 과거에 잘못 감면처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고가 응당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달성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면결정의 취소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득세 등은 신고 · 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모른 채 한 감면신고를 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납세자의 성실성을 믿은 것을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조세감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법령의 숙지도 원고의 책임인바,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다음 원고의 과오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7

적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는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띠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